

광주지방법원 2024. 9. 5 선고 2024가단514718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피스 담당변호사 박영록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2024. 7. 18.

판 결 선 고 2024. 9. 5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14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8. 24.부터 2024. 3. 18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. 8. 20.경 체결된 광주 광산구 C ‘D’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,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위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윤봉학